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 심의 검토보고

## [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

2023. 11. 28.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상규

### 1. 연구단체 운영 현황

연구단체명	구성인원	대표의원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7명	이인순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하여 심의.

### 3. 심의 대상 연구단체

-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소요예산: 4,000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325만원의 10%이내 : 16,000천원 )

### 5. 검토보고

- 연구활동 결과보고

연구단체명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연구 내용	연구주제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연구목적	급변하는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내외 정책 사례를 조사·연구하여, 성북구에 특화된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결과	(별 첨)

연구 활동비	수령액	금사백만원 ( ₩4,000,000 )	
	집행액	금이백삼십칠만구천팔백칠십원 ( ₩2,379,870 )	
	잔액	금일백육십이만일백삼십원 ( ₩1,620,130 )	
	집행내역	홍보비(현수막)	금오만오천원 ( ₩55,000 )
회의비(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금오십만구천팔백칠십원 (₩509,870 )	
결과보고서 제작비용		금일백팔십일만오천원 ( ₩1,815,000 )	
연구 용역비	수령액/ 집행액	금이천만원(₩20,000,000)	

## ■ 검토의견

- 2023년 11월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연구단체가 연구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 2013년 11월 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 심의내용은 연구 활동비 책정과 배분,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1억 7,325만원)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10조 제2항 1호 및 2호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1.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 2.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지문경비, 세미나 공청회·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어, 검토결과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 활동비 집행내역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공해 및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시점에, 기후변화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에코센터 현장 및 박람회를 방문하고, 토론, 연구하는 등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연구활동을 활성화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연구결과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됨.

---

**※ 관계법령**

- 1) 제9조(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7.)
  - ② 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19.3.7.)
  -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9.3.7.)
  -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2)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